입법동향 - 2024년 8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1
2.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5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9
2.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16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 입법례」 ····· 19
2.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 28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37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행정재산을 특정 법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 가능 여부 ····· 42
2. 주민이 자살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 ····· 46

Ⅵ. 법령 해석 사례

1. 납부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조정금 미 징수 등 여부 ····· 49
2. 조례로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등 가능 여부 ····· 54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513호, 2024. 7. 12., 제정】

□ 소관위원회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제2조).

나.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5조～제6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6곳(서울, 세종, 충남, 부산, 경북, 인천)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우리 도**의 **전기차 등록현황**은 **'22년말 12,727**대에서 **'23년말 19,795**대로 5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24. 1. 19.)

○ **최근 3년**간('20년～'22년)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1건에서 **4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화재 장소**는 **총 34건** 중 **주차장**에서의 **화재가 29건**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출처: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2023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가이드)

○ 전기차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의 검토**가 필요함.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513호, 2024. 7. 1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방화벽

5.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정】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8. 12., 충청남도조례 제5727호, 2024. 8. 12., 제정】

□ 소관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일반 이·미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불편함이 있는 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이·미용 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이용료 및 이용제한 등에 대해 규정함(제6조～제8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1곳(충남)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우리 도 등록장애인은 **130,189명**(심한장애 42,278명, 심하지 않은 장애 82,911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7.4%**에 **해당**함(자료출처: KOSIS).

○ 도내 장애인 이·미용서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커트 위주**로 **실시**하고 있지만, **날짜와 장소가 정해져 있어 일정 조율 등**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내 이·미용실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사업체에 **경사로, 저소음 이미용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검토가 필요**함.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8. 12., 충청남도조례 제5727호, 2024. 8. 1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운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이·미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이·미용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이·미용 서비스의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미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미용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하는 등 이·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이·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 및 시설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제9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년도 이·미용시설 세부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미용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시간 및 정기휴무일
2. 이·미용시설 이용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미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이·미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8., 총리령 제1971호, 2024. 7. 8., 타법개정】

□ 개정이유

◇ **축산물운반용 차량**은 **전용차고**를 두어야 하나, 차량이 1대이고 1.5톤 이하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전용차고를 설치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축산물 운반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5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7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차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어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나) **축산물운반용 차량**이 **1대이고** 해당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차고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관련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축산물 운반업**이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염장 등을 통해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을 제외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에서는 축산물운반용 차량은 전용차고를 설치하여야 하나, 일정기준 운반용 차량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도 관련 조례에는 전용차고에 대한 규정은 명 시되어 있지 않은 바, 상위법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5.,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53호, 2024.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2. “축산물 안전”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도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안전사고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물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축산물 안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3. 축산 및 축산물 생산·가공 관련 단체 대표
4. 그 밖에 축산업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물 안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검사관 임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임무
2.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3. 그 밖에 도지사가 축산물 검사 및 동물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사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관 임기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검사관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2항의 교육을 받는 검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축산물 위생감시 등)

① 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 관련 담당공무원, 검사관 및 소속 기관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축산물 위생감시 및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기본법」 제1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제17조(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 정보를 수집·정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과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915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5. 조례 5553>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부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1., 보건복지부령 제1044호, 2024. 7.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약사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관련 규칙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하였지만, 탄력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정했으나, **조례**로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제11조의5제2항)

※ 오후 8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범위에서 3시간 이상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해당조례:「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우리 도 **공공심야약국**은 **총 12곳**으로 **1곳당 인건비 형태로 3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음. ※ 전주 3곳, 완주 2곳, 나머지 시·군 각 1곳

○ 제12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업무보고 회의(2024. 1. 25.)에서 공공심야약국 **야간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범시스템 설치 등**이 **논의**되었고

○ 공공심야약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 역시 **근무자들의 안전**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심야약국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9호, 2024. 5.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도지사가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홍보)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13호, 통권 제251호, 조경희】

◇ **저출생·고령화**와 **대도시 인구집중**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외국인 미숙련 기능인력**의 규모를 **16만 5천명으로 결정**하고 업종도 **음식점·임업·광업까지 확대했다**(고용노동부 2023.12.1.). 그리고 **법무부는 2024년 숙련 기능인력의 규모를 3만 5천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단기순환형이 아닌 **장기거주형 기능인력 육성정책을 발표**했다(법무부 2023.9.25.).

◇ 한편, **일본은** 2024년 6월 21일 현행 기능실습제도와 특정기능제도를 수정한 **「기능실습법」**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공포**하였고, **2027년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기능실습법」의 법률명을 「육성취업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미숙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단계적 기능인력 육성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 외국기능인력의 확보를 위한 일본의 단계적 기능인력 육성제도는 우리나라 고용허가제도 및 장기거주형 육성정책과 유사해 보이지만, 대상 규모나 업종, 숙련 기능인력의 요건과 사업장 변경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관련 제도 및 정책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주제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기능실습제도, 육성취업제도, 특정기능제도

□ 도입

❍ 일본 총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1억 2,435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59만 5천 명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외국인근로자 수는 204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22만 6천 명이 증가했고, 이 중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41만 2천 5백여 명이다

❍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장 5년 동안 기술을 연수하는 제도**로 1993년 신설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 취지인 **기술 이전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능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였다. 이에 법무성은 2022년 '기능실습제도와 특정기능제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했고, 2023년 11월 새로운 외국인력확보 정책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4년 3월 법무성은 「기능실습법」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두 법 모두 2024년 6월 21일 개정·공포하여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개정 「**기능실습법**」**의 주요 내용**은 법률명을 「육성취업법」으로 변경, 육성취업제도의 운영방침과 **육성취업계획 인정제도의 신설**, **본인 의향에 따른 사업장 변경 인정**, **신규 감리단체와 육성기구의 설치 등**이다.

-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주요 내용**은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근로자의 기능 및 일본어 교육을 강조한 **육성취업제도의 신설**과 **특정기능제도와의 연계**, **영주허가 취소사유 명시** 등이다.

□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제도

1. 현행 외국인력 확보제도

가. 기능실습제도

❍ **기능실습제도는** 일본의 경제성장기였던 **1960년대에** 베트남 등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채용한 사원**을 **일본**에서 **교육하기 위해 시작한 연수** 제도이다.

- **기능실습생의 체류기간은** 제도 초기에 연수를 포함하여 3년이었으나 점차 종류와 기간이 기능실습 1호 1년, 기능실습 2호 2년, 기능실습 3호 2년으로 늘어났다(최장 5년).

- **기능실습생 수**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능실습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능실습생 고용을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이 인력부족을 해소 하기 위해 기능실습생의 유입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2017년**「기능실습법」시행 당시 **77개이던 기능실습 직종**을 **2023년 90개로 확대**하였다.

- 그러나 **기능실습제도**가 **단기연수제도**이기 때문에, 기능실습생은 **실습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사업장 변경이나 가족 동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림 1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수(2023.10.)



❍ **기능실습제도가** 점차 **저임금 노동력 확보수단**으로 전락하여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상황 개선을 위해 **2016년 11월 「기능실습법」을 제정**하였다(2017년 11월 시행). 하지만 **임금 미지급이**나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연간 약 1만 명에 달하는 **기능실습생**이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나. 특정기능제도

❍ 기능실습제도만으로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자, 일본은 2018년 12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하여 **숙련 기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하였다(2019년 4월 시행).

- **특정기능 1호는** 기능시험 1호를 합격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이다. 초기에는 **12개 분야**(간병돌봄, 건물청소, 공업제품제조업, 건설, 조선해양산업, 자동차정비, 항공, 숙박, 농업, 어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를 두었으나, 2024년 4월 자동차운송업, 철도, 임업, 목재산업의 **4개 분야**를 **추가**하였다.

- **특정기능 2호**는 특정기능 1호로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기능시험 2호**를 **합격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체류자격**이다. 초기는 건설업과 조선업 **2개 분야**만 **인정**했으나, 2023년 4월 특정기능 1호 분야 중에서 간병돌봄, 자동차운송업, 철도, 임업, 목재산업을 제외한 **총 11개 분야**로 **확대**하였다.

- 특정기능 1호와 2호는 체류기간과 가족동반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특정기능 1호는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특정기능 2호는 체류기간 상한이 없다**. 그리고 **특정기능 1호는 가족동반이 불가능**하나 **특정기능 2호는 가족동반이 가능**하다. 2024년 4월 현재 특정기능 1호의 총인원은 238,981명이고, 특정기능 2호의 총인원은 70명이다.

2. 외국기능인력 확보정책의 변화

❍ 2015년부터 기능실습생들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7년 시행된 「기능실습법」**은 **기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기관과 실습기업의 노동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었으나, **개선명령이나 허가취소를 받는 감독기관이나 실습기업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능실습제도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없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었다.

❍ 2023년 법무성은 ‘기능실습제도와 특정기능제도의 기본방향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외국기능 인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비전은 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② 외국인근로자의 능력 향상, ③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생사회의 실현이다.
- 구체적으로는 ①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 ② 외국인근로자의 기능과 외국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으로 특정기능제도로의 원활한 이행 도모, ③ 본인 의향을 반영한 사업장 변경 인정과 감리단체 업무 책임의 명확화, ④ 일본어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공생할 수 있는 사회 실현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 일본 외국기능인력 관련 제도 변화



출처) 法務省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15280.pdf〉
주) 2024년 개정 「기능실습법」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근거하여 2027년부터 새로운 외국기능인력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3. 외국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가. 육성취업법

❍ **「육성취업법」**은 다음과 같이 도입 목적과 운영 방식을 정하고 있다.

- 육성취업제도는 육성취업 산업분야에 있어 **특정기능 1호 수준**의 **기능**을 **갖는 인재 육성**을 **도모**하며 동시에 해당 분야의 **기능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정부는** 특정기능제도 운영방침처럼 육성취업 운영방침에서도 각 산업분야의 예상 기능인력 인원을 명시하여 **특정기능제도와 육성취업제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기능과 일본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육성취업계획**을 작성하여 **정부의 인정**을 받는다.

- 정부는 육성취업계획의 인정에 있어 3년 간의 육성취업기간, 업무와 기능 및 일본어 능력의 목표 설정, 고용기관의 관리체계, 외국인이 본국 송출기관에 지불한 비용 등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육성취업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장 변경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본인의 의향에 따라 실시하며, 동일 업종 내에서 1년이나 2년 사이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 기능실습 체류자격을 폐지하고 육성취업 체류자격을 신설하며, 외국인근로자의 특정기능 분야 지원을 위한 등록지원기관을 정한다.

- **특정기능 1호 고용기업**이 특정기능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는 적정관리를 위해 **위탁처**를 **등록지원기관으로 한정**한다.

- 등록지원기관은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업무를 대리하여 지원하는 기관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의 위탁을 받아 외국인근로자가 근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동안의 지원계획을 작성 및 실시하는 기관이다.

❍ 개정법률은 향후 영주허가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영주허가 요건 및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영주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법률은 영주허가 요건에「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 정한 의무 준수와 조세공과금의 납부를 추가하고, 신청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조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구금형에 처할 경우에는 영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국과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제도 비교

❍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도’와 ‘숙련 기능인력제도’를 활용하여 외국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에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비자: 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고용허가 제도를 적용한 미숙련 기능인력은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 간 취업활동(기본 3년, 재고용 1년 10개월)이 가능하며, 재입국 특례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1회(4년 10개월)의 취업활동이 가능하다(최장9년 8개월).

- **숙련 기능인력제도는** 장기간 국내 근무로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장기취업비자(비자: E74)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숙련 기능인력의 체류기간에는 상한이 없다.

❍ 외국기능인력 확보 제도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외국기능인력의 제도와 종류]

우리나라 기능인력제도는 고용허가제도와 숙련 기능인력제도를 활용한 **미숙련 기능인력**과 **숙련 기능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육성취업제도와 특정기능제도를 활용한 **육성취업, 특정기능 1호, 특정기능 2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계 대상업종]

우리나라의 미숙련 기능인력과 숙련 기능인력의 **연계 대상업종**은 **일본의** 육성취업과 특정기능 1호·2호의 **연계 대상업종보다 적어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취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숙련 기능인력 요건]

우리나라 숙련 기능인력제도는 일본의 특정기능제도와 달리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 기능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숙련 기능인력이 된 이후**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 이처럼 **숙련 기능인력 육성**에 있어 **민간기업**에게 **재량**을 **부여**한 점은 미숙련 기능인력의 **관리책임**도 동시에 주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미숙련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상담 창구의 적절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한일 외국기능인력 제도 비교

	한국	일본
제도	▪ 고용허가제도, 숙련 기능인력제도	▪ 육성취업제도, 특정기능제도(1호·2호)
미숙련 기능인력	▪ 7개 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처리업, 음식서비스업 등) *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 육성취업 16개 분야: 간병돌봄, 건물청소, 공업제품 제조업, 건설, 조선해양산업, 자동차정비, 항공, 숙박, 자동차운송업, 철도, 농업, 어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 임업, 목재산업
숙련 기능인력	▪ 4개 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 4년 이상 한국 체류,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추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에 근거해 체류자격을 숙련 기능인력으로 변경	▪ 특정기능 1호: 16개 분야 ▪ 특정기능 2호: 11개 분야(특정기능 1호 분야 중 간병돌봄, 자동차운송업, 철도, 임업, 목재산업 제외) ▪ 1호·2호 기능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 합격 필요
체류기간	▪ 최초입국 3년, 재고용 1년 10개월 ▪ 재입국 3년, 재고용 1년 10개월(최장 9년 8개월)	▪ 육성취업 3년 ▪ 특정기능 1호 5년 ▪ 특정기능 2호 상한 없음
사업장 변경 가능 여부	▪ 미숙련 기능인력은 최초 3년 동안 3회, 재고용 1년 10개월 동안 2회 사업장 변경 가능 ▪ 숙련 기능인력은 사업장 2년 계속근무 필수	▪ 육성취업은 취업 후 1~2년 내에 사업장 변경 가능 ▪ 특정기능 1호·2호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두지 않음
제도 위반의 경우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불법체류, 조세 체납한 경우 숙련 기능인력 전환대상에서 제외	▪ 형사상 구금형, 불법체류, 조세공과금 체납을 영주허가 취소사유로 규정
관련 법률	▪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 육성취업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인력확보제도 위반 규제]

우리나라는 **미숙련 기능인력**이 **인력확보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 **숙련 기능인력으로의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은** 추가적으로 **영주허가 취소사유로 형사상 구금형, 불법체류, 조세공과금**의 **체납**을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특정기능 체류자격으로 영주자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의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 그러나 일본 법무성은 숙련 기능인력제도를 통해 영주자 증가가 예상 되므로, 사전에 영주 허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사회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영주허가 취소 사유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주자가 취소사유의 행위를 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 자료

- 고용노동부,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2024년 외국인력 E9 16만 5천명 결정, 2023.12.1
- 법무부, 숙련 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2023.9.25
- 法務省, 技能実習制度及び特定技能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有識者会議, 2023
- 後藤雅貴, 育成就労法案, 参議院 立法と調査 466号, 2024

2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14호, 통권 제252호, 김지현】

◇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자 대상 금융범죄**의 **증가**는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는 고령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피해 고령자의 가족과 고령자를 보호하는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 **우리나라는 고령자**를 **금융사기**나 **금융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노인복지법」에서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나 금융착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미국은**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하여 연방법과 주법 상 **성인보호서비스법, 금융기관법, 증권법**의 각 분야에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 등이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의심 시 해당 관계기관에 신고·통보**할 수 있고, **제3자 통지 및 거래·지급**의 **연기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민사상·행정상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로 인한 사회문제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고령자 보호를 위한 우리 금융 관련 입법 추진 시 참고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노인복지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주제어	고령자, 금융사기, 금융착취, 금융학대, 보이스피싱

□ 도입

❍ 2024년 7월 10일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 명(19.51%)을 넘어서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그림 1> 이에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이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을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60대 이상의 피해금액이 36.4%(704억 원)**로 가장 크다<그림 2>

그림 1 연도별 고령인구 추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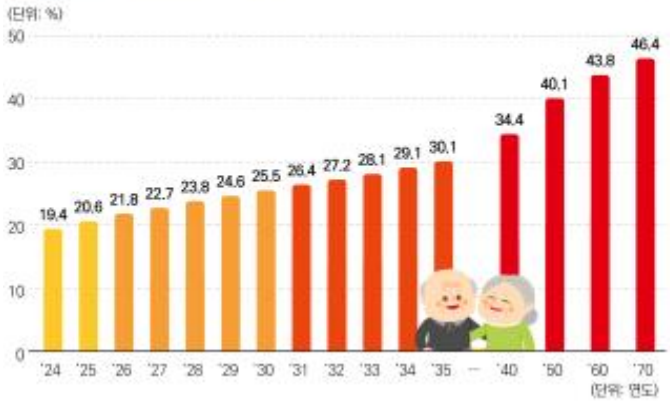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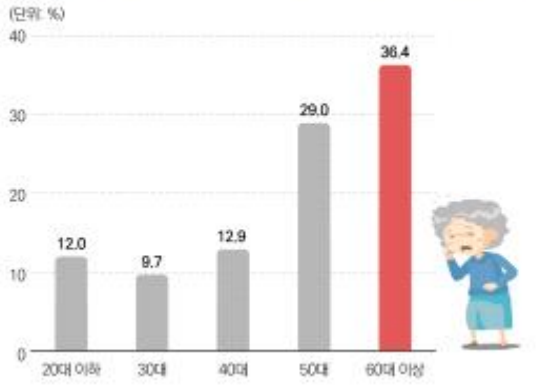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율(2023)



❍ **고령층의 금융손실**은 고령자 **본인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손실 이후 경제적 회복이 어려움에 따라 향후 **가족 및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부양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연령대에 한정된 문제로 보기 힘들다. 이에 **입법**을 통하여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금융사기'**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나, **미국**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의 **금융착취(financial exploit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란 ①고령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또는 무단

으로 취득·사용하거나, ②고령자에 대한 후견인 지위 등 법적 권한 사용을 포함하여 사기, 협박, 부당한 영향력 등을 통해 고령자 재산을 통제・유용하는 행위를 모두 의미한다.

❍ 금융착취 보호 대상인 고령자 연령은 미국 연방법의 경우 65세를 기준으로 하나, 각 주법은 60세, 62세, 65세, 70세 등 다양한 연령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법뿐 아니라 각 주법에서 금융착취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고령자금융착취방지법** 등을 **금융기관법과 증권법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과 각 주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입법에 참고하고자 한다.

□ 연방법

❍ **2018년** 미국 연방의회는 **「경제 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입법하였다. 동법 제303조에서는 고령자 보호를 위하여 '대상 금융기관' 직원이 **고령자에 대한 금융착취가 합리적**으로 **의심될 때**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 등의 **고객 금융정보 공개 행위**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민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상 금융기관'**(covered financial institution)에는 은행·저축조합 등 **예금기관**이나 **신용조합뿐 아니라** 증권거래 종사자인 **브로커-딜러**와 **투자자문업자,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해당**된다.

❍ **‘해당 기관’**(covered agency)에는 ①주(州)증권기관 및 주(州)보험 규제기관 등의 **주(州)금융 규제기관**, ②금융기관심사위원회에 속하는 **연방기관**, ③등록된 **증권협회**, ④**증권거래위원회**, ⑤**법집행기관**, ⑥ 주·지방의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 APS) 등이 속한다.

❍ ① ‘대상 금융기관’의 임직원(이하 ‘금융기관 직원’)이 ②금융착취 식별에 관한 교육을 받고, ③65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④이를 (법집행기관이나 주(州)성인보호 서비스 등의)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민사상·행정상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며, ‘해당 기관’에 통보 시 면책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해당 기관’ 통보 시 금융기관 직원의 면책 요건

(1) 통보 전 교육 수강
: 교육내용은 ‘대상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고령자 대상의 금융착취 징후 및 식별 방법, 내부보고 방법 및 ‘해당 기관’ 통보 방법,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포함함
(2) 관리자로서 또는 법적기능 준수 등으로 행한 통보
(3) ‘해당 기관’에 선의로(in good faith)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with reasonable care) 행한 통보

□ 주법(州法)

1. 개관

❍ 각 주의 **성인보호서비스(APS) 법규정**은 고령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학대(financial abuse)방지를 위한 **신고·통보**에 **중점**을 두는 반면, 각 주의 **금융기관법과 증권법**은 신고·통보뿐 아니라 제3자 통지나 거래·지급 연기 등 **고령자 보호 금융조치**에 **중점**을 둔다.

❍ 신고·통보 및 제3자 통지, 거래·지급 연기 등은 모두 금융기관 직원에

의한 고객 금융정보의 공개행위에 해당되므로 각 주는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법률로 일정한 면책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 (증권)브로커-딜러 및 투자자문업자가** 선의(善意)로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 행한 각종 신고, 통보, 통지 및 거래·지급 연기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이 **면책**된다.

표 1 주법 상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 관련 조치

규정법률	성인보호서비스(APS)법	금융기관법	증권법
보호법익	• 고령자 대상 금융학대 방지	• 금융착취로부터 고령자 금융보호	• 금융착취로부터 고령자 금융보호
보호대상[14]	• 고령자	• 고령자	• 고령자
행위 주체	• 고령자 관련 직업종사자 (금융기관 등 포함)	• 금융기관 직원	• 브로커-딜러, 투자자문업자 등
보호행위 내용	• 신고·통보 (신고의무 또는 임의통보)	• 신고·통보 (신고의무 또는 임의통보) • 제3자 통지 • 거래·지급 연기 • '해당 기관' 자료제출 의무	• 신고·통보 (신고의무[15]또는 임의통보) • 제3자 통지 • 거래·지급 연기 • '해당 기관' 자료제출 의무
해당 기관 (신고·통보 수령) ※ 주마다 상이하며 예시임.	• 성인보호서비스 • 법집행기관(경찰 등)	• 성인보호서비스 • 법집행기관(경찰 등) • 금융 관련 행정기관 • 법무부, 보건인력부, 가족부 등 행정기관	• 성인보호서비스 • 법집행기관(경찰 등) • 증권거래위원회 등 증권 관련 행정기관
공개행위 보호	• 면책 (민사·형사·행정상 면책) • 의무적 신고의 경우 미신고 시 과태료·벌금 부과	• 면책 (민사상 면책, 행정상 면책)	• 면책 (민사상 면책, 행정상 면책)
관계법	• 사회복지법	• 은행법 • 금융보호법 • 고령자금융착취방지법	• 고령자금융착취방지법

2. 성인보호서비스법에서의 고령자 보호

❍ 대부분의 주는 성인보호서비스법에서 고령자 관련 직업군 종사자에게 고령자 학대·착취 발견·의심 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주에서 금융기관 직원에게도 고령자 대상 금융학대·금융착취 사안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주법 상 신고의무

-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법전 내「고령자 학대 방지 및 요부양 성인 보호법」(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은 성인보호서비스(APS)와 관련하여 은행 및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고령자 금융학대 의심 시 '의무적 신고자'(mandated reporter)로 명시**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Cal.Welf. & Inst.Code § 15630.1)

- **금융기관 직원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직접 접촉했거나, 전문 실무범위 내 금융학대 지식을 가지고 **고령자**의 **금융자료·기록·거래**를 **검토·승인**했거나, 고령자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어도 검토·승인 시점에 자료·기록·거래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금융학대를 의심한 경우**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역의 **성인보호서비스**나 **법집행기관**에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금융기관법에서의 고령자 보호

❍ 각 주의 은행법 또는 금융기관법은 고령자 금융보호를 위한 여러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의심 시 '해당 기관' 통보(루이지아나주, LSA-R.S. 6:1373), 제3자 통지(버지니아주, VA Code Ann. § 6.2-103.2), 거래·지급 연기 허용(몬타나주, MCA 32-1-1503), '해당 기관'에 자료제공 의무(로드아일랜드주, Gen.Laws 1956, § 19-34-6), 금융기관 직원교육 의무(미시간주, MCLA 487.2085) 등 다양한 내용을 각 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 버지니아주법 상 제3자 통지 허용

- 2024년 버지니아주는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의심 시** '제3자 통지 허용 조항'을 신설하였다(VA Code Ann. § 6.2-103.2). 금융기관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금융착취의 표적 또는 피해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때 **금융기관(직원 포함)**이 **연락**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믿을 수 있는 제3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제출·갱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명단이 제출된 경우 명단에 기재된 자를 포함하여, 명단 외에 ②계좌의 공동 소유자, 계좌 수익자, ③고령자와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금융기관(직원 포함)이 알고 있는 가족 등(일정한 경우에 한함), ④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중 한 명 이상에게 금융기관은 금융착취 위험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통지의 수령자가 금융착취 가해자라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미시간주법 상 금융기관 직원교육 의무화

- 금융기관이 **금융착취 징후 인식**을 **위한 직원 교육 및 '해당 기관' 통보**에 관한 정책을 개발·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에는 최소한 '금융착취 보고 절차'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외에 금융착취 유형·징후, 연방 가이드, 내부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M.C.L.A. 487.2085).

4. 증권기관법에서의 고령자 보호

❍ 북미증권감독협회(NASAA)의 모델법

- 금융기관(은행 등) 외 증권기관에 대해서 2016년 **'북미증권감독협회'(NASAA)가 고령자 등의 보호**를 위한 **모델법(Model Act)**을 **마련**하였다. 모델법의 **핵심내용**은 ①신고의무 부과, ②사전 지정된 제3자 통지 허용, ③지급 연기 허용, ④'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의무, ⑤민사상·행정상 면책 규정이다.

- 2023년 기준 40개에 가까운 주에서 모델법을 기반으로 주(州)증권법 내 고령자 금융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 뉴저지주법 상 신고의무 및 거래·지급 연기 허용

- 뉴저지주는 2020년 주(州)통일증권법 내에 「금융착취보호조치법」(Safeguarding Against Financial Exploitation Act)을 제정하고 신고의무 등 모델법의 핵심내용을 규정하였다.

  브로커-딜러나 **투자자문업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금융착취**가 **발생**했거나 **금융착취**가 **시도**되었거나 또는 **시도 중**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주(州) 법무공공안전부 산하 소비자청 **증권국'과 관할 카운티 '성인보호서비스'**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면책**을 **명시**하였다 (N.J.S.A. 49:3-86)

- **브로커-딜러 또는 투자자문업자는** '요청된 거래·지급' 및 '의심되는 금융착취'에 대한 내부 검토 후 요청된 거래·지급이 **고령자 금융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고령자의 계좌나 고령자가 수익자인 계좌로부터 **거래·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시 그리고 늦어도 거래·지급이 연기된 날로부터 **이틀(영업일 기준) 내**에 **거래관련자, 증권국**과 **'성인보호서비스'**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연장 요청 등이 없는 경우 최초 연기된 날로부터 **최대 15일(영업일 기준)까지 연기**할 수 있다(N.J.S.A. 49:3-88).

□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고령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2020년 8월 금융위원회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안)**'**을 논의한 바 있고, **2024년 6월 14일**에는 **노인학대 범죄**로 경제적 학대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 최근 금융분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가 은행 점포**를 이용하는 **주고객층**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은행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이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체계적 대응절차** 및 **직원교육**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이 고령자 금융착취 사안을 **법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통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금융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면제 규정** 및 **제3자 통지 조치**, **거래·지급 연기 조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또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로서의 **경제적 착취**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고령자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심각한 **금융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직원에게도 **자율적 통보가 아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도 향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자료

- 금융위원회,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2020
- CFPB, Financial institutions can help prevent elder financial exploitation with alerts to trusted contacts, 2021
- Federal Trade Commission, Protecting Older Consumers 2022-2023, 2023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8월 첫째주	외교통일	○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 유럽에 흐르는 우경화 물결 ○ 중공당 20기 3중전회 분석 : 기술적 진보와 창의적 사고 ○ 베트남의 정치지형 급변에 따른 정치환경과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 중국의 시각 ○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의 재선이 주는 정치적 의미와 시사점 ○ COI 보고서 발표 10년 :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 북한의 2024년 상반기 정책 평가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북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 추진의 의미와 한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세계은행의 중·저소득국가를 위한 클라우드 및 데이터 인프라 시장 보고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위협 환경에 대응하는 2024년 보안 전략 트렌드 ○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 ○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및 시사점
	여성가족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강화방안
	국토교통	○ 민관협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가능성 위해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 촉진 방안 마련해야
	법제사법	○ 외국대리인 등록 관련 해외 사례 및 정책적 고려사항
	환경노동,행정안전	○ 지속가능 순환경제 실현 위한 '순환경제사회촉진법' 지자체 역할 확대 위한 제도 정비와 현행 법 개정 필요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8월 첫째주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 한우농가 경영안정화 과제 ○ 해운·조선업 2024년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 농업 부문 풍수해 방재를 위한 과제 : 호우와 태풍을 중심으로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 대전 야간관광 특화도시 활성화 및 정착 방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최근 수출 호조의 구조적 요인과 배경 ○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환경노동	○ 고령층 노동시장 조사자료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 디지털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고용센터 개선 방안
	보건복지	○ 의료기관 회계 관리 현황과 과제 : 3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8월 둘째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파편화된 국제질서 속 지식재산 보호 현황과 시사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시사점 ○ 우주산업의 ESG 친환경 혁신 : 도입 결정 요인과 재정적 영향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데이터 신질서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데이터 인프라" 개념과 추진 전략 ○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규제 연구
	환경노동	○ 세대 상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연구 : 한일(韓日) 사례를 중심으로 ○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업의 녹색 전환과 녹색 스킬 분석
	보건복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엔데믹 시대, 의료기기 전략 품목과 시장 분석. 2부, 호조품목 전략시장편 ○ 엔데믹 시대, 의료기기 전략 품목과 시장 분석. 1부, 전략품목편
	보건복지	○ 북한의 예방접종률 하락과 아동의 보건 위기 상황
	행정안전	○ 다중운집 취약성 분석 기반 서울시 인파 안전관리 방안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8월 둘째주	국토교통	○GTX 개통 100일, 향후 추진 일정과 주요 이슈는?
	외교통일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동남아에서 강대국 영향력 균형의 향배 ○북한 수해 대응의 특징과 문제점 ○미일동맹의 진화와 한국에의 함의 ○"트럼프의 공포"와 한국 핵무장 여론
	정무	○우리나라의 해외증권투자 현황과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탄소중립형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저탄소 축산기술 주요 동향
8월 셋째주	외교통일	○북한 제4차 UPR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대응 방향 ○코로나 19 전후 불법 중국어선 문제의 현황과 전망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 ○(미·중 갈등과 경제안보) 닉슨–저우언라이 회담록을 통한 교훈) ○시진핑 신시대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합성과 새로운 균형 모색
	국토교통	○지역·지구 등의 토지이용규제 비교분석 연구 ○도시 공간 특성을 고려한 모빌리티 허브 도입방안
	행정안전	○정부 부문의 협업 사업 관리의 이슈와 개선방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보 통신	○G7 오픈사이언스 정책 담론과 시사점
	정무	○변화의 기로에 선 지방은행
	외교통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중국의 신성장 동력, 저고도 경제(低空經濟) 발전현황 및 전망
	기획재정	○대외충격의 자본유출입 효과와 경기안정화 정책 분석
	보건복지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특성과 대응 방향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8월 셋째주	국방	○국방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점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 행정안전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방안 연구
8월 넷째주	행정안전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구분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 ○서울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방안 연구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연구
	외교통일	○유럽연합의 대(對)중앙아시아 추진 전략과 시사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재 하의 러시아 경제 : 주요 성장요인의 분석과 향후 전망 ○김정은은 왜 우리 언론의 수해 보도에 화를 냈을까?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 성과와 제언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공화당 내 다양한 해석 등 ○북한 식량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식량 교환프로그램 ○북한 인권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및 평가 ○(2024) 중동 분쟁의 배경과 전망 ○기시다 정부의 태평양 도서국 협력 동향과 한일 협력 방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재해석
	국방	○2024 미국, EU 방위산업전략의 주요 내용과 함의 ○(8월) 한미연합훈련(UFS) 시행의 의미 및 시사점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 ○최근 러시아의 대북 정책 평가 및 전망 ○전시 우리 군 성과기반군수지원의 지속지원성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ESG활동이 혁신활동과 차기 기업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항공 소재·부품기업 경영실태와 개선방안 ○체코 수소산업 동향과 진출기회 ○글로벌 웰니스 산업 성장과 우리나라 수출 유망분야 분석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쌀 생산량조사 진단과 개선과제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8월 넷째주	환경노동	○일본 배출권거래제 특징과 시사점 ○반도체제조업의 일자리전환 실태 연구 ○건설노동자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및 실행방안 구축 연구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에 따른 쟁점과 과제 ○활동적 고령화(ActiveAgeing)를 위한 고용정책 연구 ○근로환경조사 조사자료 이용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정보	○우주안보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생성형 AI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업무 영향 분석 ○美 콜로라도 주,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쓰레기 문제 ○너도나도 AI? 말로만 AI 외치는 'AI 워싱' 주의보 ○글로벌 초거대 AI 모델 현황 분석(2020~2023년) ○미국, 의회(상원) '인공지능 정책 로드맵'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행정안전	○서울시민 식생활 실태 분석과 식생활 정책방향 ○해조류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남의 과제
	여성가족, 행정안전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성과평가 체계구축과 운영방안
	국토교통	○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전략
	보건복지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자 현황과 재활을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여성가족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방안
	외교통일, 보건복지	○저출생과 국제이주 시대의 한반도 통일정책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행정재산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관리를 특정 법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구로구, 의견24-0179, 2024. 8. 19.〕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각주: 이 사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에 따라 구로구의 **행정재산**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관리**를 **특정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각주: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하는데(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됨(공유재산법 제5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계약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단서**는 행정재산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각주: 2014. 2. 19. 의안번호 1908036으로 제안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일반입찰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의 **수의계약은** 그 계약상대자 외의 자에 대해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871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수의계약 사유를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의 **범위**도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의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여타 법령에서도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달리 규율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의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통해 의결하는 자치법규인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 법제처 2024. 4. 4. 회신 24-0018 해석례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로구의 **행정재산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관리를 특정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2 김천시장이 김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자살한 경우 그 사람의 세대원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 김천시, 의견24-0147, 2024. 7. 19.]

□ 질의요지

김천시장이 **김천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자살한 경우** 그 사람의 세대원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 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먼저, 자살한 김천시 주민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를 살펴보면, 세대원의 자살로 심리적·재정적 고통을 겪는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사무는 김천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천시장이 질의요지와 같이 자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자살예방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이 사안의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살예방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생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등"에는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자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내용과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그 실질이 생계비와 동일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생계비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에서의 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김천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자살한 경우** 그 사람의 **세대원인 유족에게 자살예방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Ⅵ. 법령 해석 사례

Ⅵ. 법령 해석 사례

1 분할납부할 수 없는 조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미 징수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24-0524, 2024. 8. 6., 광주광역시 동구】

□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각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하며(지적재조사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각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하며(지적재조사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하되(본문),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 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5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각주: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1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최소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등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분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함),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각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유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조정금을 납부받아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각주: 부산고등법원 2020. 4. 24. 선고 2020누20064 판결례 참조)

이러한 조정금의 성격을 고려하면 **조정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률에서 정한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6항**에서는 체납된 **조정금을 징수할 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각주: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각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하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 납부의무자(각주: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해당**하므로, 조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6항을 근거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금의 성격**과 **지적재조사법의 규정 체계를 종합**하면,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6항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금 납부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금 체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적재조사법**에서는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강제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적소관청**은 **체납된 조정금**에 대하여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재조사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0조제2항),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제21조제5항 단서), **조정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조정금 납부 의무에 대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조정금의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조정금 납부 의무 면제 및 분할납부 규정을 둔 실익이 없어지게 되는바**, 체납된 조정금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의 체계를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까지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체납된 조정금에 대한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6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없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 ⑤ (생 략)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등 관련) 【민원인 24-0428, 2024. 8. 6.】

□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특별시등"이라 함)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비고 제8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이 적용되는 주택(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함)(이하 "이 사안 대상주택"이라 함))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등**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4호에서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에 따라 구분하여 **주차대수를 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5호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비고 제8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대상주택의 경우 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의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같은 표 비고 제8호에 따라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다가구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규정한 것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서 **'주차대수'만을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223 해석례 참조), 이와 달리 같은 **표 비고 제8호**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기준만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규정 자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간 적용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의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보아 특별시등의 조례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제1호 단서),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등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제1항제2호가목)하거나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제1항제2호나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건설기준규정 자체에서 이미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조례로 강화하는 것만을 예정한 경우**(각주: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참조)임에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되거나**, 당초에 **조례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강화가 가능**해지는 등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의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8호에 따라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규정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의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

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 3. (생 략)

(생 략)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 11. (생 략)

(생 략)

비고

1. ~ 7. (생 략)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 15. (생 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4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소형 주택일 것

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해 사용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② ~ ⑦ (생 략)



이 자료는 도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